

제44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이 資料는 2010年 3月 10日 14:00부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과제

2010. 3.

전병목·박상원
박명호·조명환

개 요

□ 주제 :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 일시 : 2010년 3월 10일(수) 14:00~16:00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4:00~14:10 개회사

▶ 개회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4:10~15:4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김진영 강원대 교수

▶ 발표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 토론자 안중범 한국재정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필모 KBS 해설위원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가나다순)

15:40~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00 폐회

목 차

I. 배경	1
II. 주요 조세정책 현황	3
1. 개요	3
2.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 인하	6
3. 재산세 부담 완화	11
4. 기타	14
가. 목적세 정비	14
나. 기타 세정개선	15
III. 과거 정책의 성과와 평가	16
1. 전반적 성과	16
2. 소득세 부문	19
3. 법인세 부문	21
4. 재산세 부문	22
5. 목적세 부문	25
IV. 향후 정책과제와 방향	27
1. 전반적 방향	27
2. 부문별 과제 및 정책방향	28
가. 재정건전성 회복	28
나. 고용확대 및 서민지원	28
다. 녹색성장 및 기업경쟁력 강화	30
라. 기타	31
참고문헌	33

표목차

<표 II-1> 2008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4
<표 II-2> 2009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5
<표 II-3> 소득세율/법인세율 개편 추이	7
<표 II-4> 최저한세율 인하	8
<표 II-5>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변화	9
<표 II-6> 유가 환급금 지급 개요	10
<표 II-7> 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개요	12
<표 II-8>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	13
<표 III-1> 위기시 민간소비 변화(전분기 대비)	18
<표 III-2> 조세부담율 변동 추이	18
<표 III-3> 국가채무 변동 추이	18
<표 III-4> 소득세 징수액 변동 추이	19
<표 III-5> 2008 소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 부담액 및 실효세율 변화	20
<표 III-6> 총 조세 중 법인소득 세수 비중	21
<표 III-7> 최근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 추이	24
<표 III-8> 최근 종합부동산세 신고 세액 추이	24

표목차

[그림 II-1] 연결납세제도 방식	9
---------------------------	---

I. 배경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을 넘어감에 따라 새롭게 추진된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방향설정이 중요
 - 출범 후 2년간의 주요 정책기조는 지난 정권의 정책 평가에 기반하여 구성되었으며, 최근의 경제상황 변경을 일부 반영
 - 따라서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

- 이명박 정부의 초기 조세정책 기조는 양호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집중
 - 경제위기 이전 시기는 우리나라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시기로서 2007년 통합재정수지는 이전의 적자기조(2006년 -1.3%)에서 0.4% 흑자로 전환
 - 이에 따라 세부담 증가속도가 높은 개인 소득세, 국가간 자본유치 경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인세 등의 세수증가 속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추진되었으며 동시에 고유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세 인하, 환급금 지급 등이 추진되었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지출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재정수지도 급격히 악화
 - 경기침체에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총 수요증가를 위한 재정 지출, 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추세로 전환하는데 성공
 - 빠른 경기회복을 달성하였으나 정부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되어 2009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5.0%까지 하락

- 재정건전성의 문제와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의 설계가 중요
 - 이를 위해서 지난 2년간의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이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할 필요
 - 이러한 정책과제 제시는 경기회복의 속도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단기적 목표와 중장기적 목표의 조화도 중요

- 본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조세정책을 평가한 다음, 달라진 경제 환경 하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검토

Ⅱ. 주요 조세정책 현황

1. 개요

- 이명박 정부의 주요 조세정책은 2008, 2009년 시행된 세제개편으로 요약될 수 있음
 - 2008년 세제개편에서는 세 부담 인하 방안으로 소득세율 인하,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확대, 유가환급금 지급 등을 시행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저세율 구조 형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연결납세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사업자 과세단위 확대, 문화산업에 대한 R&D세액공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 R&D 지원확충을 위해서 R&D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
 - 양도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감면요건 강화, 과세범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다주택자 중과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의 종합소득세제와 일치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 2009년 세제개편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감세정책보다는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된 세제개편에 중점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 신설 등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등을 통해 과세기반 확충에도 노력

<표 II-2> 2008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수시 개편	정기 개편(12월)
소득세	- 유가환급금 지급	- 소득세율 인하(2단계에 걸쳐 2%p) - 기본공제 인상 및 교육비·의료비공제 확대 - EITC 지급금액 인상 및 수급요건 완화
법인세	- 과표구간 상향조정	- 법인세율 인하(2단계에 걸쳐 3~5%p) -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문화산업 R&D 세액공제, 접대비 손비 일몰 연장 - R&D시설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확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소비세	-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등 면제, 종부세 및 재산세 등 감면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양도 소득세		- 1세대1주택 양도세 감면요건 강화, 과세범위 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
종합 부동산세		- 과표적용률 동결 및 보유세 상한 하향 -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표 II-3> 2009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수시 개편	정기 개편(12월)
소득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 - 저소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3주택 이상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법인세		- 지정기부금 대상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확대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 신성장산업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소비세	- 노후승용차 교체시 개별 소비세인하 -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기 타	- 3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사업자 등록절차 간소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 등

□ 전반적으로 2008년 세제개편은 양호한 재정개선 추세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경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

-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 및 기업의 세부담 증가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하,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등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활성화 유도
- 다양한 조세정책 방안중 상징적인 효과가 큰 세율인하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

□ 반면 2009년 세제개편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세원투명화 노력과 단기적인 소비회복,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

- 악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을 지양

하고 정책목적에 특화된 세분화된 지원 혹은 납세 편의성 제고, 세원투명성 제고에 중점

-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자동차 소비세 경감, 부동산 양도세 중과폐지 등을 시행

2.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 인하

□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하는 세부담 증가속도의 완화와 국가간 조세 경쟁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인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를 감안하여 수정

- 소득세율의 경우, 기존의 8/17/26/35%구조를 1단계로 2009년에는 6/16/25/35%로, 2010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6/15/24/33%로 인하하는 방안이었으나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35%→33%)를 2012년까지 2년 연기
 - 2008년에는 일률적인 2%p인하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중하위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낮은세율 구간의 인하를 1년 먼저 추진하는 2단계 방안으로 전환
 - 인적공제금액을 기존의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난 10여년간의 물가상승 효과를 반영
- 법인세율의 경우, 기존의 13/25% 세율구조를 단계별로 11/25%(2008), 11/22%(2009), 10/20%(2010)로 낮추는 방안이었으나 2010년 예정 최고세율 인하(22%→20%)는 재정건전성문제를 감안하여 2012년까지 2년간 연기
 - 2008년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기존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이러한 세율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한 조세부담률은 2000년 이후 3.1%p 증가하여 2007년에는 22.7% 수준으로 증가(2000년 기준)

<표 II-4> 소득세율/법인세율 개편 추이

	2008	2009	2010~2011	2012
소득세율				
- 1천2백만원 이하	8%	6%	6%	6%
- 4천6백만원 이하	17%	16%	15%	15%
- 8천8백만원 이하	26%	25%	24%	24%
- 8천8백만원 초과	35%	35%	35%	33%
법인세율				
- 1억원 이하	11%	11%	10%	10%
- 2억원 이하	11%	11%	10%	10%
- 2억원 초과	25%	22%	22%	2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에 따라 최저한세율도 인하 조정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최저한세율을 2008년 이전에는 10%에서 2008~2009년 귀속분에 대해서 8%, 2010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 7%로 단계적으로 낮춤
- 대법인에 대해서는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14%로 인하하였고, 2010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3%로 적용하려 하였으나
 -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담세여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법인에 대해 2010년 이후 귀속분 최저한세율을 13%에서 2008년 이전 수준인 15%로 상향조정하려 하였으나,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따라 이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현재 대법인의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14%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표 11-5> 최저한세율 인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소기업		10%	8%	8%	7%	7%	7%
일반기업	100억원 이하	13%	13%	11%	10%	10%	10%
	100억~1000억원			11%	11%	11%	11%
	1천억원 초과	15%	15%	14%	14% ¹⁾	14%	14%

주: 1) 2008년 세제개편에서는 일반기업에 대하여 2010년 이후 과표 1천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3%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법인세율 추가 인하 논의에 따라 이는 15%로 상향 조정되었고,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 2년 유보에 따라 이는 다시 14%로 조정되었음.

- 세율인하와 함께 투자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 기존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투자에 대해서만 7%를 적용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해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투자에 대해서 10%로 적용하도록 확대
 -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
 - 추가공제: (당해년도 투자액 - 직전3년간 연평균 투자) × 10%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확대
- 2009년 세제개편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분적으로 연장
 -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1982년 도입이후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려 하였으나,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¹⁾.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는 폐지되었고, 지방투자에 대해서만 7%의 임

1) 이에 대한 법령은 2010년 2월 초 현재 국회 통과만을 거쳤고 법령의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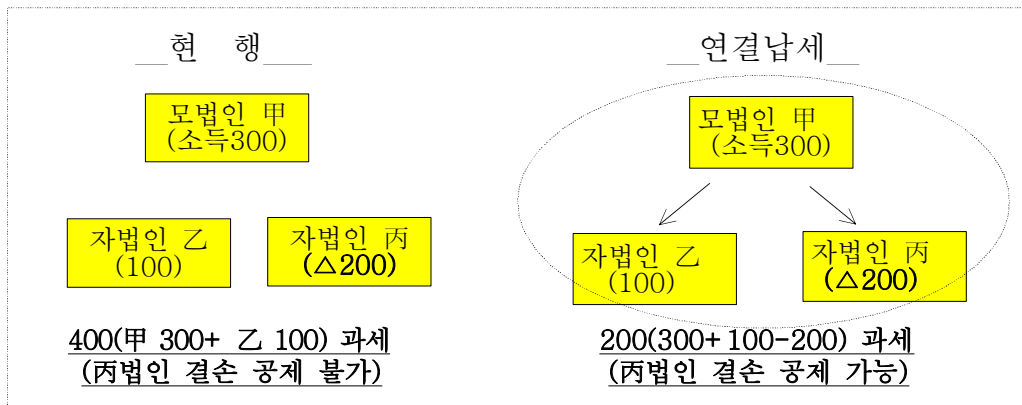
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표 II-6>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변화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	-	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7%	7%	10%	7%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조직의 선택(사업부제와 분사화)에 따라 세 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이연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
-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합하여 과세

[그림 II-1] 연결납세제도 방식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을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며, 다만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의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존의 개별납세방식과 연결납세방식 중에서 선택

- 연결납세제도는 OECD 회원국중 미국, 영국, 일본 등 21개국 운영

□ 유가환급금 제도는 2008년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 정책

○ 지급대상은 2008년 동안 근로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7년 기간 소득이 근로자의 경우 3,600만원, 종합소득자의 경우 2,400만원 이하인 자

- 2007년 소득이 없는 자는 2008년 소득기준으로 지급

○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24만원을 차등지급

- 3,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 2,000만원 미만 종합소득자는 24만원,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18만원, 12만원, 6만원을 차등 지급

□ 유가환급금 1차 지급은 2008년 4/4분기에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2.7조 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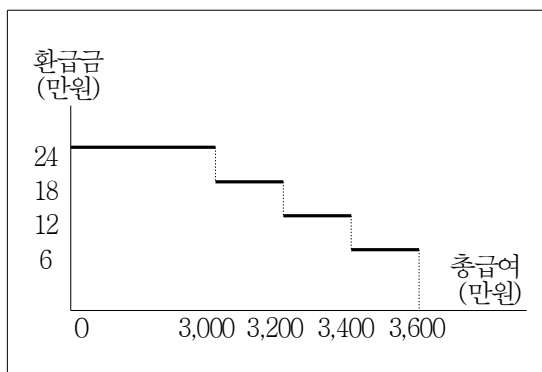
○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10월, 종합소득자 12월에 반기별 지급 형태로 지급

- 지급된 유가환급금은 2008년 4분기(혹은 2009년 1분기)까지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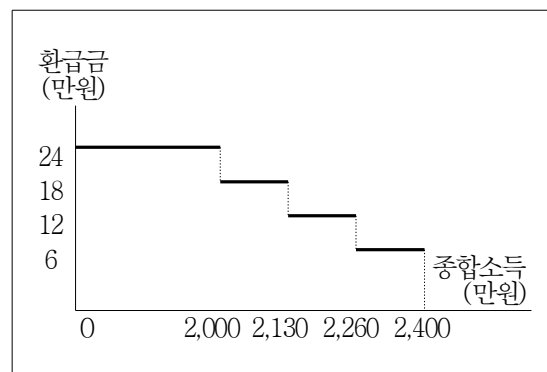
○ 2008년 신규 근로자, 사업영위자의 경우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지급

<표 II-7> 유가 환급금 지급 개요

근로자 유가 환급금



자영자 유가 환급금



3. 재산세 부담 완화

-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납세자의 불만 및 조세저항을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정책도 정상화를 추진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정책방향은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통해 추진하며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방세목으로 운영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재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여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소급 적용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단위의 변경과 함께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 과세구간 및 세율, 과세기준 금액 등을 조정
 - 과세표준이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하던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
 -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
 -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단, 2009년 70%, 2010년 75%)

<표 II-8> 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개요

부동산 유형	구분	종합부동산세 체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주택	과세방법	개인만 세대별 전국합산	인별 전국합산																						
	과세기준액	공시가격 합 6억원	공시가격 합 6억원 (단,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9억원)																						
	과세표준	(Σ 주택공시가격 - 6억원)	(Σ 주택공시가격 - 6억원)*FMV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9억원																						
	세율	<table><tr><th>과세표준액</th><th>세율</th></tr><tr><td>3억원 이하</td><td>1%</td></tr><tr><td>14억원 이하</td><td>1.5%</td></tr><tr><td>94억원 이하</td><td>2%</td></tr><tr><td>94억원 초과</td><td>3%</td></tr></table>	과세표준액	세율	3억원 이하	1%	14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	<table><tr><th>과세표준액</th><th>세율</th></tr><tr><td>6억원 이하</td><td>0.5%</td></tr><tr><td>12억원 이하</td><td>0.75%</td></tr><tr><td>50억원 이하</td><td>1%</td></tr><tr><td>94억원 이하</td><td>1.5%</td></tr><tr><td>94억원 초과</td><td>2%</td></tr></table>	과세표준액	세율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
	과세표준액	세율																							
	3억원 이하	1%																							
	14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																							
과세표준액	세율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																								
세부담 상한액	전년 대비 총세액의 300%	전년 대비 총세액의 150%																							
과표적용률	'07년 80%, '08년 90%, '09년 100%	80%																							
재산세 공제액 산출방식	<table><tr><td>재산세로 부과된 세액</td><td>×</td><td>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td></tr><tr><td>합계액</td><td></td><td>전체 재산세 표준세액</td></tr></table>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합계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table><tr><td>재산세로 부과된 세액</td><td>×</td><td>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td></tr><tr><td>합계액</td><td></td><td>전체 재산세 표준세액</td></tr></table>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합계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합계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합계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1세대 1주택 공제제도	-	○ 고령자 세액공제: 60~65세 미만: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5~10년미만: 20%, 10년 이상: 40%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	과세방법	개인만 세대별 전국합산	인별 전국합산																						
	과세기준액	공시지가 합 3억원	공시지가 합 5억원																						
	과세표준	(Σ 토지공시가격 - 3억원)	(Σ 토지공시가격 - 5억원)*FMV																						
	세율	<table><tr><th>과세표준액</th><th>세율</th></tr><tr><td>17억원 이하</td><td>1%</td></tr><tr><td>97억원 이하</td><td>2%</td></tr><tr><td>97억원 초과</td><td>4%</td></tr></table>	과세표준액	세율	17억원 이하	1%	97억원 이하	2%	97억원 초과	4%	<table><tr><th>과세표준액</th><th>세율</th></tr><tr><td>15억원 이하</td><td>0.75%</td></tr><tr><td>45억원 이하</td><td>1.5%</td></tr><tr><td>45억원 초과</td><td>2%</td></tr></table>	과세표준액	세율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45억원 초과	2%						
	과세표준액	세율																							
	17억원 이하	1%																							
	97억원 이하	2%																							
97억원 초과	4%																								
과세표준액	세율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45억원 초과	2%																								
세부담 상한액	전년 대비 총세액의 300%	전년 대비 총세액의 150%																							
과표적용률	'06년 70%, '09년까지 연 10%씩 ↑	80%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	과세방법	인별 전국합산	인별 전국합산																						
	과세기준액	공시가격 합 40억원	공시가격 합 80억원																						
	과세표준	(Σ 토지공시가격 - 40억원)	(Σ 토지공시가격 - 80억원)*FMV																						
	세율	<table><tr><th>과세표준액</th><th>세율</th></tr><tr><td>160억원 이하</td><td>0.6%</td></tr><tr><td>960억원 이하</td><td>1%</td></tr><tr><td>960억원 초과</td><td>1.6%</td></tr></table>	과세표준액	세율	160억원 이하	0.6%	960억원 이하	1%	960억원 초과	1.6%	<table><tr><th>과세표준액</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0.6%</td></tr><tr><td>400억원 이하</td><td>1%</td></tr><tr><td>400억원 초과</td><td>1.6%</td></tr></table>	과세표준액	세율	2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이하	1%	400억원 초과	1.6%						
	과세표준액	세율																							
	160억원 이하	0.6%																							
	960억원 이하	1%																							
960억원 초과	1.6%																								
과세표준액	세율																								
2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이하	1%																								
400억원 초과	1.6%																								
세부담 상한액	전년 대비 총세액의 150%	전년 대비 총세액의 150%																							
과표적용률	'08년 65%, '15년까지 연 5%씩 ↑	70%('10년 75%, '11년이후 80%)																							

- 주: 1. 법에 규정된 과표적용률 대신 시행령에 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FMV') 사용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의 인하는 2008년부터 적용되며, 특히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3. 위헌판결된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은 인별합산으로 전환되었고 2006년도까지 소급적용

□ 2009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세부담상한선도 인하

-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주택분 재산세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종전 대비 20~50% 낮은 수준으로 인하

<표 II-8>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 이하	0.15%		6천만원 이하	0.1%
1억원 이하	0.3%		1.5억원 이하	0.15%
1억원 초과	0.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 2009년부터 6억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130%로 인하
 - 주택공시가격대별로 5~10배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불형평을 다소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정책

<표 II-9>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주택공시가격	세부담 상한비율	⇒	주택공시가격	세부담 상한비율
3억원 이하	105%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50%		6억원 초과	130%

4. 기타

가. 목적세 정비

- 정부는 2008년 9월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를 간소화한다는 취지에서 3대 목적세를 모두 개별소비세와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2010년 시행) 발표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
 - 교육세중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은 본세에 흡수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분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VAT로 전환
 - 농어촌특별세중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분은 본세 감면을 하향 조정
 -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분은 본세에 흡수 통합
 - 종부세분(20%)은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분: 본세(지방세) 흡수통합 유도
-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게 되면 세부담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예산배분에 있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조정을 통해 최대한 중립화가 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
 - 목적세 폐지로 내국세가 증가하므로, 국가·지방간 재정중립 유지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조정이 필요
 - 지방재정 교부금은 일반회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목적세는 일반회계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개별소비세와 같은 본세는 포함됨
 -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를 막기 위해 일반회계 내국세의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
 - 농특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본세 통합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것이라고 발표
-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통합을 전제로 개별소비세 세율을 조정하는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

한법, 관세법 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2010년 적용)하였으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해 당사자의 반대로 법안개정에 실패

□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폐지 개정에 실패함에 따라 2009년 하반기 3대 목적세 폐지의 유예를 결정

- 2009년 9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3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시키며 12월에는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법을 다시 개정하여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

나. 기타 세정개선

□ 2009년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서민층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납세환경개선과 세원투명화에 노력을 집중

- 납세환경 개선방안으로 사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 전자화문서 보관대상 확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500만원 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 등
- 세원투명화 방안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확충,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간 연장 및 신청건수 제한 폐지 등

Ⅲ. 과거 정책의 성과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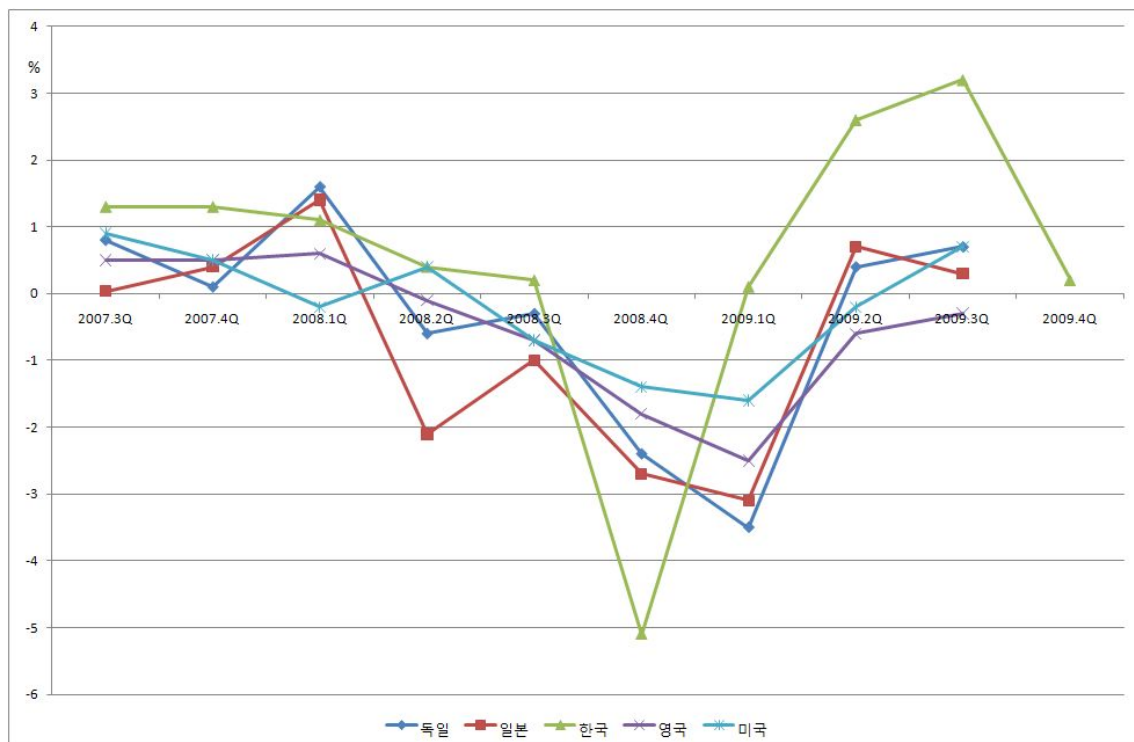
1. 전반적 성과

- 지난 2년간 조세·재정정책은 크게 집권초기부터 시작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세정책(2008년 이후)과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 이후 위기극복 정책으로 구분
 - 감세정책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등
 - 경제위기 극복 정책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폐지,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국정지표인 “활기찬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의지를 높여주는 세율인하에 중점
 - 동시에 고유가를 극복을 위한 유류세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등으로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였고 종합부동산세도 개선
- 이러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세정책의 시행은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응 시차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여 조속한 경기회복에 기여
 - 경제위기 발생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정책을 계획하였으나 이의 결정과 설계, 그리고 집행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차가 존재
 - 다만 2008년 경제위기 발생전에 도입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2009년), 2008년 하반기에 지급된 유가환급금 등은 위기발생 직후의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등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데 기여
- 다양한 정책조합으로 인해 2009년 1/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등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속한 회복세를 보임

- 2009년 GDP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조세부문의 경우 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촉진에 노력
 - 주요 정책수단들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노후승용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다주택자(1세대3주택이상)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임

[그림 III-1] 주요국의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 조세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정책은 민간부문의 소비위축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추는 효과를 발휘

-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에 비해 위기사 민간소비의 하락폭이 크지 않고 회복도 상당히 빠른 추세
 - 다만 경제위기의 지속기간이 외환위기에 비해 길어 정부정책이후 다소 낮아지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1> 위기시 민간소비 변화(전분기 대비)

(단위: %)

구분	Q-4	Q-3	Q-2	Q-1	Q	Q+1	Q+2	Q+3	Q+4
외환 위기	-0.7	1.6	0.9	-1.8	-14.6	0.5	2.0	1.9	3.9
경제 위기	0.4	1.1	-0.2	0.0	-4.6	0.4	3.6	1.5	-0.1

주: 외환위기의 발생시기(Q)는 1998년 1분기, 경제위기(Q)는 2008년 4분기 기준

- 전반적으로 고용유지 및 민간소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의 조합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한 점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 다만 경제위기 이전 추진한 감세정책과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음
 - 중기적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한 것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표 III-2> 조세부담율 변동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세 부담율	14.2	14.7	15.2	16.6	16.3
조세 부담율	18.4	18.9	19.7	21.0	20.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표 III-3> 국가채무 변동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8	298.9	309.0	366.0
(전년대비증감(조원))	(32.1)	(37.4)	(44.9)	(34.8)	(16.1)	(10.1)	(57.0)
GDP대비비율	21.6	24.6	28.7	31.1	30.7	30.2	35.6
(전년대비증감(%p))	(3.1)	(3.0)	(4.1)	(2.4)	(△0.4)	(△0.5)	(5.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 2.. 9

2. 소득세 부문

- 세율인하와 공제제도 개편 등으로 구성된 소득세 정책은 과거 높았던 세 부담 증가율을 완화시켜 경제활동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 2004~2007년 기간 동안 GDP증가율 5.6%를 두 배이상 상회하는 속도로 (갑종)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
 -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율 인하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한 것은 중요한 진전중 하나

<표 III-4> 소득세 징수액 변동 추이

(단위: 십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증가율	
						2004~2007	2008
종합소득세	4,453	4,607	4,841	6,151	4,078	11.4	-33.7
갑종근소세	9,819	10,382	12,245	14,124	15,595	12.9	10.4
합계	14,271	14,989	17,086	20,275	19,673	12.4	-3.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 소득세율 인하의 효과는 장기적인 성장자극 효과와 단기적인 소득분배 변화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성장효과는 세율인하로 인한 추가소득의 소비촉진 및 근로활동의 유도를 통해 나타나는데 금번 소득세율인하 정책의 추진 이유
 - 소득세율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분배효과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단기적인 효과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변화가능
-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성장효과는 재정승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IMF(2009)보고서에 따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소득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1차년도 0.2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이는 5년차까지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 10년차에는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하여 0.4수준에 가깝게 증가
- 소득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단기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1차연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효과의 두 배 수준

-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소득세율 인하(공제제도 변화 포함)의 재분배 효과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세액 경감율이 높게 나타나 위기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수 있는 서민층의 소비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평균적인 세액경감율은 15.5% 수준이나 소득이 낮은 1~3분위의 경감율은 각각 26.3%, 31.8%, 31.9%에 달하여 두 배 수준
 - 절대 경감액은 기존의 부담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세율구조의 누진성에 따른 결과

<표 III-5> 2008 소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 부담액 및 실효세율 변화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총소득	10,574	18,160	24,341	29,990	36,142	42,593	49,592	58,051	69,918	103,880	44,323
세액											
2008 유지	40	119	228	441	814	1,150	1,699	2,537	3,491	7,731	1,825
2008 개편	29	82	156	315	593	876	1,343	2,094	2,982	6,938	1,541
실효세율 ¹⁾											
2008 유지	0.38	0.66	0.94	1.47	2.25	2.70	3.43	4.37	4.99	7.44	4.12
2008 개편	0.28	0.45	0.64	1.05	1.64	2.06	2.71	3.61	4.26	6.68	3.48
세액 경감율(%)	-26.3	-31.8	-31.9	-28.6	-27.1	-23.7	-21.0	-17.4	-14.6	-10.2	-15.5
세액 감소	11	37	72	126	221	274	356	443	509	793	284

주: 1) 실효세율=소득세액/총소득*100

자료: 전병목, 『경제위기이후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8.

- 2008년 하반기 시행한 유가환급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0.5% 내외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기간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에 효과적
-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2차조사에 따른 결과로 이를 통해 가구소득 지니계수도 약 0.15% 개선 시켰음

3. 법인세 부문

- 법인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확대 등은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적 왜곡효과가 높은 법인세부담을 낮추어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
 -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유치를 위한 국제경쟁 등을 감안하여 투자 및 고용확대를 위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추진
 - 김승래·김우철 (2007)은 1970~2004년의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에 해당하는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 일반소비과세나 노동과세의 한계효율비용보다 크게 추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확대는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에 한해 투자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앞당겨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표 III-6> 총 조세 중 법인소득 세수 비중

(단위: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7
한 국	13.5	12.3	14.1	16.0	15.1
일 본	22.4	15.9	13.8	15.5	16.8
미 국	8.9	10.	8.7	11.7	11.0
캐나다	7.0	8.2	12.2	10.5	11.0
영 국	9.9	8.1	9.8	9.3	9.4
독 일	4.8	2.8	4.8	4.9	6.1
OECD 평균	8.0	8.0	10.1	10.3	10.8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 2009.

- 2009년부터 시행된 법인세 최고세율 3%p인하는 김우철(2008)에 따르면 투자율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GDP를 0.48~0.59%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율(I/K)을 1.47% 증가시켜 약 11만명(2006

년 기준)의 취업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GDP는 0.48~0.59% 증가

- 그 외 CGE 모형을 이용한 김승래(2009)에 따르면 법인세율 5%p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7.8조원 수준으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 6.9조원보다 높은 수준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등 R&D 분야의 조세지원을 확대한 것은 사회적 최적수준으로의 투자를 유도하여 장기적인 성장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 R&D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사회적 최적수준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 원종학·김진수 (2005), 송종국·김혁준(2009) 등에 따르면 R&D 조세지원은 기업의 R&D 투자의 유의미한 증가를 유발하며 그 효과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남

4. 재산세 부문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은 계층간 대립 및 세제의 복잡성을 야기하면서도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우리나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

- 기존 중부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필수적

□ 특히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유세 운영의 원칙을 밝혔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함

-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공급확대 정책과 더불어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등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하며,
 -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보유세 체계를 급격하게 개편하기 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을 통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힘
- 또한 중부세처럼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부과하기 보다는

재산세같은 보편적 세목을 통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추진함

- 부동산 보유세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로 운영함

□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3단계의 점진적 접근은 현재의 결정을 반영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결정으로 판단됨

- 3단계 접근법은 과표 적용률, 세부담 상한 인하 등을 통한 세부담 완화에서 시작하여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의 합리화, 마지막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
-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가 지방재정에 미칠 효과 등 현실적인 제약 문제를 고려하여 단기간에 완성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보유세 정상화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함

□ 2008년 및 2009년도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 노력은 다음과 같이 세수입과 납세인원의 변동을 통해 확인 가능

- 2007년 대비 신고인원은 86%(2008년) 및 44%(2009년)로 크게 감소
 - 개인 주택분의 신고인원은 81%(2008년) 및 42%(2009년)으로 대폭 감소
 - 토지분에 대한 신고인원도 2007년 대비 2009년에 47.2%로 크게 축소
- 2007년 대비 신고세액은 84%(2008년) 및 37%(2009년)로 크게 감소

<표 III-7> 최근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 추이

(단위: 천세대, 천명)

구분		2005 ¹⁾	2007 ¹⁾	2008 ¹⁾	2009	비율(%)			
		①	②	③	④	②/①	③/②	④/②	④/①
주택	개인	34	378	306	158	1,099.2	81.0	41.8	464.7
	법인	2	4	3	2	178.4	75.0	50.0	100.0
	계	36	382	307	160	1,047.3	80.4	41.9	444.4
토지	계	40	127	130	60	315.6	102.4	47.2	150.0
계 ²⁾	개인	62	469	398	-	754.6	84.9		
	법인	9	14	14	-	100	100		
	계	71	483	413	210	164.1	85.5	43.5	295.7

주: 1) 2007년은 세대, 2005년 및 2008년 이후는 명

2) 주택과 토지의 중복 신고인원을 제외한 수치

3) 신고인원 비율 중 2009년 귀속 신고인원의 경우 단위가 천명이어서 오차가 클 수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보도참고자료, 2009. 11.

<표 III-8> 최근 종합부동산세 신고 세액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5	2007	2008	2009	비율			
		①	②	③	④	②/①	③/②	④/②	④/①
주택	개인	285	12,043	7,276	1,523	4,225.6	60.4	12.6	534.4
	법인	107	568	1,173	893	530.8	206.5	157.2	834.6
	계	391	12,611	8,448	2,416	3,225.3	67.0	19.2	617.9
토지	계	6,035	15,060	14,832	7,819	249.5	98.5	51.9	129.6
계	개인	892	15,731	10,939	-	1,763.6	69.5		
	법인	5,534	11,940	12,342	-	215.8	103.4		
	계 ¹⁾	6,426	27,671	23,280	10,235	430.6	84.1	37.0	159.3

주: 2008년 당초 부과고지세액은 2조 8,803억원(주택 1조 731억원 + 토지 1조 8,072억원)이나 합산 배제 추가신고 및 개정세법 소급적용으로 인한 환급세액 등 5,523억원을 차감한 세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보도참고자료, 2009. 11.

- 종부세 정상화 조치로 인해 신고인원과 세액이 2007년과 비교하여 급감하였지만, 종부세를 도입한 연도인 2005년과 비교시 상당히 증가한 수준
 - 2009년 개인 주택분 종부세의 신고인원은 2005년 대비 연평균 38%씩 증가한 수준이며 신고세액도 연평균 44%증가한 수준

5. 목적세 부문

- 목적세 폐지 및 존속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지난 2년 여간의 논란은 우리나라 목적세의 현주소를 잘 대변하고 있음
 - 폐지를 추진하는 측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설득과 동의 없이 진행함으로써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
 - 존속을 주장했던 측은 특정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이기주의였다고 비판 받음
 - 1998년에도 ‘조세체계 간소화법’을 제정하여 목적세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된 적이 있는데, 10여년이 지난 이후 유사한 과정을 반복
- 목적세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세목간의 통폐합이 아니라 교부금을 비롯한 정부간 재정, 교육재정 교부금 조정 등 민감한 제도와 함께 다루어 져야 하는 어려움 야기
 -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며 지출부처의 반발이 존재
- 목적세 존폐에 대한 가장 큰 대립은 “세출구조에 대한 큰 변화 없이 세입구조만 단순하게 할 수 있다” 주장과 “보완장치가 미흡하거나 재원보충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
 - 대표적인 예가 교육세 폐지
 - 정부는 일반회계 내국세 교부 비율을 조정하면 교육재정의 전체 규모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교육계는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투자가 오히려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

- 정치적 논란 및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이외에도 세입구조의 단순화가 어떤 실질적 편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부족
 - 특히 세출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 목적세 폐지의 정당성은 단지 세입구조의 단순화임
 - 전술한 바와 같이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입구조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이지만 이의 개편이 가지는 실질적 편익은 추정하기 어려움
 - 본세에 통합한 경우 세부담은 동일하므로 납세자로부터의 지지는 없음
 - 목적세 폐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세출의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을 뿐더러 재정당국은 예산배분의 중립을 약속
 - 즉 목적세가 세출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 지방교육세의 경우 교육재정과 지방정부 일반예산 사이의 배분을 중립화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공식을 명문화하려고 함
 - 교육재정과 지방정부 재정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칸막이 때문에 발생
-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이 폐지가 통과된 세목도 3년간 더 존속된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재정운영의 신축성 측면에서 아쉬움
 - 2013년에 동일한 논란이 계속될 것은 자명

IV. 향후 정책과제와 방향

1. 전반적 방향

-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킨 결과, 미래 불확실성은 남아있으나 정책목표인 경제 안정화를 일정 부분 달성
 - 세계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이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재정 건전성의 우위는 큰 의미가 없으며, 출구전략의 적절한 수립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은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
 -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채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할 필요
 - 조세부문의 경우 ‘넓은 세원-낮은 세율’ 정책기조 하에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의 충격이 남아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세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
 - 이러한 정책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
 - 목적세 존폐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개선할 필요
- 중기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G-20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등 세계적 공통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세정책 추진

2. 부문별 과제 및 정책방향

가. 재정건전성 회복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부문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출부문에 중점을 둘 필요
 - 세입부문의 세수확대노력은 지나칠 경우,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하므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한도내에서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를 위해 기존의 '넓은 세원-낮은 세율'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정책방안들을 모색
- 세입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세수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주요 조세지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즉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의 개선자료로 활용할 필요
 - 또한 지나친 감면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조세 감면 사전제한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세감면율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
- 납세자가 세법 및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납세 안내 기능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에서도 모든 납세자 유형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비율을 높여 탈세 근절 노력을 강화할 필요

나. 고용확대 및 서민지원

-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노동수요의 부족, 부문

적으로는 수요-공급간 불일치(Mismatch)가 공존하는 형태

- 사례: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중소기업과 3D업종의 구인난,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수요-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고학력 구직자, 구직 단념자 등의 신규일자리 창출 수단을 개발하여야 함

□ 장기적 정책방향은 교육 정원 등 노동공급 시스템 조정과 함께 직업훈련 강화,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방안 등이 중요

- 조세정책적으로는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많은 부문으로의 인력공급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단기적인 조세정책 대안들은 기업 및 근로자들의 즉각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 구성이 중요

- 고용증가에 기준한 세액 혹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경감
- 서민지원의 효과를 갖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기능확대 혹은 유사한 기능의 단기적 제도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
 - 근로장려금의 지급주기 조정 등도 검토 가능
-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투자액과 함께 고용수준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

□ 그 외에도 기부활성화 등을 통해 복지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기부관련 세제 개선을 통해 거액기부를 촉진함과 동시에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도 추진
 - 정부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비영리단체(종교·자선단체 등)의 복지 전달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동시에 기부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기부금 단체(종교·자선단체 등)의 요건을 강화

다. 녹색성장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조세체계가 외부성 교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환경성 제고 필요
 -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와 자동차 등 경제전반의 가격 체계에 반영하면서 녹색성장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적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탄소세제 도입과 배출권거래제의 부문별 병행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환경관련 세제 조정을 포함한 탄소세 도입 등 세제의 친환경 기능 강화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
 - 기업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친환경 R&D 개발 및 투자 활성화 추진
 -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저소득층 및 에너지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 생계형 사업자 유가보조금,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등 직접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활용

- 자동차 관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녹색성장을 강화하고, 각종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 강화
 - 자동차세를 연비 혹은 CO2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하고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고효율 차량에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
 - 친환경건물 등의 부동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등 기타 친환경 제품 및 소재에 세제지원
 - 친환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녹색펀드(주식, 채권 등)의 친환경 사업 투자에 세제혜택을 통해 전반적 성장역량을 강화할 필요

- 그 외에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투자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 IFRS 도입에 맞추어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

-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재무정보 보고의무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 기타

- 국민신뢰의 회복과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조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의 역할 강화
 - 국제화·고도화되고 있는 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 마련과 세무조사 기능 강화
 - 조사건수 및 비율을 증가시켜 세무조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축소하고 동시에 세수손실 방지 및 성실납세 유도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세무행정의 성과평가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요
 - 업무 확대 및 인력제약 등 바뀐 세정환경에 부응하여 세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조직구조를 개선할 필요
- 목적세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배분의 경직성 vs 특정분야 세출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 개선해 나갈 필요
 - 목적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방만한 예산운용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특별회계를 통한 세출 확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
 -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체계도 구축하고 일몰이 도래되었을 때에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특정 분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당장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과거 정책경험으로 볼 때 한시적 도입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

- 현재 국세로 운영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검토할 필요
 - 현 종부세는 부의 재분배, 부동산가격 안정, 균형발전 재원이라는 3가지 도입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며 5단계 누진세인 종부세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
 - 현 주택분 재산세는 4단계 누진구조로 전체 9단계로 구성
 - 종부세와 재산세의 주무부처가 다른 현실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향후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 논의기구를 구성할 필요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보도참고자료, 2009. 11.
-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08. 9.
- _____,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 보도자료, 2010. 1.
- _____, 『2009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09. 8.
- 김승래 · 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7-13, 한국조세연구원, 20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09.
- 송종국 · 김혁준,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기술혁신연구』, 제17권 제1호, 2009, 1-48.
- 원종학 · 김진수,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전병목, 『경제위기이후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9.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 2009.